


의정활동보고서



제262회 임시회(2013. 5. 2 ~ 5. 15)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더 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제262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배한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도의원으로서
우리 도 의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비회기중에는 일본의 독도침탈 교과서 왜곡 규탄
대회를 비롯하여 우리 도와 대구시의 상생발전 간담회와
정책연구위원회 개최 등 우리 도민들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체전과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준비 등 당면한
도정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도내 저수지 붕괴사고, 산불
발생 등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전 공직자와 우리 도민 모두는 하나로 뜻을 모아
불안한 요소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겠습
니다.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을 저해하는 4대악
적절에도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생활 속의 피로를
풀어주는 안식처이자 우리 사회가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도민 모두가 가정의 소중함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시기입니다. 일손 돕기와 농업용수확보 등 영농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풍년농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서는 집행부에 대한 엄격하고 면밀한 검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민의 모든 뜻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송 필 각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3
III. 의안처리		18
IV. 민원처리		20
V. 본회의 보고사항		22
VI. 5분 자유발언		49
□ 이용진 의원(건설소방위원회/울릉)		49
□ 이경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비례)		52
□ 김말분 의원(기획경제위원회/비례)		55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안동)		58
□ 김영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경산)		61
□ 이상용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영양)		64
□ 한혜련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영천)		68

부 록

□ 조례안(13건)	 71
------------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62회 임시회는 2013년 5월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5월 15일까지 14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7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5월 2일(목)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이용진 의원의 “울릉공항 건설 및 독도 실효적 지배와 관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경임 의원의 “치매환자 등 요양등급 외 어르신에 대한 복지정책 개발 촉구”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 의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책 관련” 문화환경위원회의 김명호 의원의 “도산별시, 도백이 주관하는 대통령상 행사로 격상되어야” 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서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수)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 김영식 의원의 “공로연수제 폐지 및 정년연장 검토 관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상용 의원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사업 내실화 촉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한혜련 의원의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재조명 및 마상제 축제관련”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안전심사에 있어서는 14건의 조례안과 기타안 1건 등 총 15건을 의결하였다.

조례안 중 “경상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도 원안 가결하였다.

이 밖에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실라리안과 도 중점 육성지원 중소기업인 프라이드 업체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의 발전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정책개발과 예산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격려하였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 여성문화 센터”를 방문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문화 전승·창조에 앞장서는 사례와 설명을 청취하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에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게 여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어서 제주 영어교육도시 “브랜섬홀아시아”를 방문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환경 조성에도 다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하였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과 안동문화관광 단지를 방문하여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고 지역에 차별되고 숨겨진 문화자원의 진수를 찾아내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기초인프라 강화에 애를 쓰는 한편, 주요 현장위주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항상 도민과 소통하고 폭넓은 현장 여론을 수렴해 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고령축산물 공판장과 덕곡 저수지 및 독도까지 돌아보는 강행군을 펼쳤다. 지난달 도내 저수지 붕괴 후 노후 저수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며, 거점도축장으로 지정된 고령축산물 공판장에서는 관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당부하였다. 또한 독도 고유전복 2만마리 방류행사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량생산을 통해 독도해역이 바다 목장화의 표본을 만들어 가자고 부탁하며 의정활동에 꼭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구미에 있는 「119 특수구조단」을 찾아 현황보고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또한 우수기 대비 대형건설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공사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고 지역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해 항상 현장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기숙형중학교 추진 선진사례인 속리산 중학교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당면현안사항 청취와 학교를 둘러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타시·도의회 교육현안 논의를 위해 충북도의회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3년 5월 2일(목)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3년 5월 2일 ~ 5월 15일(14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63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7	1	1	1	1	1	1	1	.	.
누 계	359	29	46	47	40	32	45	39	41	40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회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2(목) 14:00 (제1차)	☐ 5분 자유발언 ○ 이용진 의원(건설소방위원회/울릉) ○ 이경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비례) ○ 김말분 의원(기획경제위원회/비례)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안동) ☐ 안전처리 ○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5. 15(수)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 ○ 김영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경산) ○ 이상용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영양) ○ 한혜련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영천) ☐ 안전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2(목) 13:30	☐ 안전심사 ○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2(목) 15:18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13(월) ~ 5. 14(화)	☐ 현지확인 ○ 프라이드 및 실라리안 업체 ○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2(목) 15:30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2(목) 15:30	○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5. 12(일) ~ 5. 14(화)	☐ 현지확인 ○ 타시도 복지시설 주요 현장 비교견학 -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제주 영어교육도시(외국인 사립학교)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3(금) 10:30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5. 6(월) ~ 5. 7(화)	☐ 현지확인 ○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상황 점검 ○ 안동문화관광단지 개발현장 및 경북문화콘텐츠 진흥원 운영상황 파악 등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3(금) 10:00	☐ 농수산국 당면현안사항 보고 ☐ 현지확인 ○ 덕곡 저수지 관리실태 현장확인 ○ 고령군 다산면 축산물 공판장	
5. 6(월) ~ 5. 7(화)	☐ 현지확인 ○ 독도 전복 방류행사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3(금) 10:00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현지확인 ○ 강정고령보 ○ 「119특수구조단」 긴급기동대 운영실태(구미)	
5. 9(목) ~ 5. 10(금)	☐ 현지확인 ○ 동명~부계간 도로건설공사 현장(군위) ○ 안평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현장(의성) ○ 농암 ~산양간 도로건설공사 현장(문경) ○ 혁신도시건설사업 현장(김천)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6(월) ~ 5. 7(화)	☐ 현지확인 ○ 기숙형중학교 추진 선진사례(속리산중) ○ 타시·도의회 교육현안 논의(충북도의회)	
5. 10(금) 13:30	☐ 안전심사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Ⅲ. 의안처리

※ ()내는 제9대 의회 누계임. (단위 : 건)

구 분		접수 (부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19 (407)	19 (399)	16 (317)	3 (78)	(4)	(3)	(5)	
조 례 안	소 계	13 (237)	13 (229)	10 (162)	3 (63)	(4)	(3)	(5)	
	의 제 회 안	6 (99)	6 (94)	4 (69)	2 (25)		(2)	(3)	
	도지사 제 출	4 (91)	4 (88)	4 (66)	(21)	(1)	(1)	(2)	
	교육감 제 출	3 (47)	3 (47)	2 (27)	1 (17)	(3)			
규 칙 안		(3)	(3)	(3)					
예산·결산		(21)	(21)	(6)	(15)				
동의·승인		2 (34)	2 (34)	2 (34)					교육위 의결 1
건 의 안		(3)	(3)	(3)					
결 의 안		(34)	(34)	(34)					
기 타 안		4 (75)	4 (75)	4 (75)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5)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 달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12. 8. 31.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1. 전찬걸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7. 황이주 의원 외 3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4		4	3	1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6 (105)				4				1	1
의 윤 회 영	1 (2)									1
기 경 회 제	(13)									
행 보 건 복 지	(18)									
문 화 회 경	(8)									
농 수 산	1 (4)								1	
건 소 설 방	4 (55)				4					
교 육	(5)									
특 별 위 원 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 원 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송	
계	6 (105)	6 (105)				
의회운영	1	1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농 수 산	1	1				
건설소방	4	4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 2011. 6. 1부터 타기관 민원은 상임위 회부전 이송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16건(조례안 14, 동의안 2)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13. 4.2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3. 4.23)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3. 4.23)
김수용 의원 (2013. 4.17)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황이주 의원 외 7인 (2013. 4.22)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병훈 의원 외 21인 (2013. 4.22)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김명호 의원 외 2인 (2013. 4.22)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 (2013. 4.23)
경상북도지사 (2013. 4.22)	경상북도관광공사 자본금(현금)출자 계획안	„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이용진 의원 외 8인 (2013. 4.22)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3. 4.23)
황이주 의원 외 5인 (2013. 4.22)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배수향 의원 (2013. 4.22)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2013. 4.2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2013. 4.23)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2013. 4.30)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교 육 (2013. 5. 1)

2. 조례공포 사항 : 12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3. 3.26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 4.11 (제3409호)
"	"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3410호)
"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11호)
"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12호)
"	"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3413호)
"	"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414호)
"	"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415호)
"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16호)
"	"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3417호)
"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06호)
"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07호)
"	"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3408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농 수 산 위 원 회	4. 10	경 기 도, 전라남도	- 타시도 무상급식 벤치마킹 및 간담회 - 경기도 친환경농업급식센터 - 나주시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4. 16	구미 여자중, 성주 중앙초	- 학교급식 현장간담회 개최 - 도, 교육청, 영양교사, 학부모회, 소위원회 위원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4. 1 ~ 4. 3	일본 대마도	- 대마도 탐방 - 독도지킴이 안용복 루트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4. 24	청송군청	- 경북·대구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 상생발전 과제 선정 및 토론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도 단위 행사】

- 경북도의회 - 영남대 로스쿨 MOU 체결
 - 일 시 : 2013. 3. 26(화) 14:00
 - 장 소 : 의장 집무실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위원장
- 방재능력 향상 및 긴급구조 시범훈련 참석
 - 일 시 : 2013. 3. 26(화) 15:00
 - 장 소 : (주)포스코
 - 참 석 : 김희수 의원

- 생생한 도민생활 현장탐방 참석
 - 일 시 : 2013. 3. 27(수) 10:30
 - 장 소 : 울진군청, 울진군내 일원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황이주 의원
-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3. 3. 27(수) 11: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방문의 날 참석
 - 일 시 : 2013. 3. 27(수) 13:30
 - 장 소 : 포항 넥스틸(주)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차세대 여성리더십과정 도민참여 교육 참석
 - 일 시 : 2013. 3. 27(수) 14:00
 - 장 소 : 울진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황이주 의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방문의 날 참석
 - 일 시 : 2013. 3. 27(수) 16:00
 - 장 소 : 울진 덕운수산(주)
 - 참 석 : 황이주 의원

- 2013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연찬회 개최
 - 일 시 : 2013. 3. 27(수) ~ 3. 29(금)
 - 장 소 : 대전, 세종, 충남 태안
 - 참 석 : 장세헌 위원장, 김봉교·김창숙·박기진·박태환·서정숙·이정호·추재천·홍광중 의원
- 경상북도 여성시대 비전 선포식 참석
 - 일 시 : 2013. 3. 28(목) 15: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채옥주 위원장, 이 달·이경임·최우섭·최학철 의원
- 경북도민일보 창간9주년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3. 28(목) 19:00
 - 장 소 : 티파니웨딩
 - 참 석 : 김희수 의원
- 2013 행복! 나무심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3. 29(금) 10:00
 - 장 소 : 김천 생명과학고등학교
 - 참 석 : 송필각 의장, 나기보·배수향 의원
- 경상북도내 평생교육담당자 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3. 3. 29(금) 10:20
 - 장 소 :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포항)
 - 참 석 : 김원석 의원

- 제10차 경북 이·통장 연합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3. 3. 29(금) 10:30
 - 장 소 : 구미 GM웨딩
 - 참 석 : 구자근·이태식 의원
- 상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3. 3. 29(금) 14:00
 - 장 소 : 상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참 석 : 강영석·한재석 의원
-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 제2차 현장 세미나 참석
 - 일 시 : 2013. 3. 29(금) 15:00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 경상북도 관광홍보관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13. 3. 29(금) 15:30
 - 장 소 : 육군 3사관학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경상북도 여성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3. 29(금) 16:00
 - 장 소 : 구미 금오산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윤창욱·구자근·변우정·
심정규·장영석·이태식 의원
- 경북우수쿵푸협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3. 29(금) 18:00
 - 장 소 : 구미 금오산호텔
 - 참 석 : 구자근 의원

- 제3회 경상북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3. 3. 30(토) 11:00
 - 장 소 : 울진 군민체육관
 - 참 석 : 황이주 의원
- 박약회 제36차 유교문화 학술대회 참석
 - 일 시 : 2013. 3. 30(토) 14:00
 - 장 소 : 영주 국민체육센터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김종천 의원
- 경상북도교육청 2013 사랑·희망 나무심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4. 1(월) 11:00
 - 장 소 : 김천 금릉초등학교
 - 참 석 : 나기보·배수향·추재천 의원
- 제2회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3. 4. 1(월) 14:00
 - 장 소 : 경주 전춘항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정상진
위원장, 이상효·이 달·권영만·곽광섭,
이정호, 최학철, 한창화 의원
- 의원연구단체 사회안전망연구회 세미나 참석
 - 일 시 : 2013. 4. 1(월) 14:30
 - 장 소 : 성주 가야산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 위원장, 박기진·강영석·
곽광섭·구자근·김희수·나기보·배수향·
윤성규·정영길 의원

- 여성친화도시 지정 선포식 참석
 - 일 시 : 2013. 4. 2(화) 11:00
 - 장 소 : 포항시청 광장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도레이첨단소재” 탄소섬유 1호기 준공식 및 2호기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3. 4. 3(수) 11:00
 - 장 소 : 구미 도레이첨단소재 구미3공장
 - 참 석 : 이태식 의원
- 제41회 보건의 날 및 제44회 정신건강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4. 4(금) 11:00
 - 장 소 : 영천 실내체육관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김창숙 의원
- 경북도-섬서성 자매결연 체결 및 실크로드 탐험대 입성식 참석
 - 일 시 : 2013. 4. 4(목) ~ 4. 7(일)
 - 장 소 : 중국 서안 북문일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진현·전찬걸 위원장, 김영기·장세헌·김말분·김봉교·김세호·김영식·김하수·김희수·도기욱·박권현·심정규 의원
- 제7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축진단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4. 5(금) 11:00
 - 장 소 : 구미 구미코
 - 참 석 : 이태식 의원

- 제45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3. 4. 5(금) 15:00
 - 장 소 :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홍진규 의원
- 2013년 초등학교 도의회 현장학습
 - 일 시 : 2013. 4. 5(금) ~ 4. 30(화)
 - 인 원 : 25개교 1,188명
 - 참 석 : 김영식 · 박권현 · 윤성규 의원
- 제19대 경상북도 생활체육회장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4. 8(월) 14:00
 - 장 소 : 상주 실내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강영석 의원
- 경상북도교육청 안동학생야영장 개원식 참석
 - 일 시 : 2013. 4. 8(월) 14:30
 - 장 소 : 안동 학생야영장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김명호 · 이영식 · 홍광중 의원
- 경상북도 축산단체연합회 창립총회 참석
 - 일 시 : 2013. 4. 9(화) 11:00
 - 장 소 : 경북 농업인회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정상진 위원장,
곽광섭 · 나기보 · 나현아 · 정영길 · 한창화 의원

- YCI뉴스 제5기 학생기자단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4. 9(화) 17:00
 - 장 소 : 영천 교육지원청
 - 참 석 : 송필각 의장
- 2013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10(수) 11:00
 - 장 소 : 경주공업고등학교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3. 4. 10(수) 13:30
 - 장 소 :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 참 석 : 박태환 의원
-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13. 4. 11(목) 11:00
 - 장 소 : 안동 청소년문화센터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명호·이영식 의원
- 2013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3. 4. 11(목) 15:00
 - 장 소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 달·최우섭 의원
- 경북바이오산업 투자기업 MOU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3. 4. 12(금) 10:3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 보문호 축제 참석
 - 일 시 : 2013. 4. 12(금) 19:00
 - 장 소 : 경주 보문호 수상공연장
 - 참 석 : 김원석, 이 달 의원
- 제94주년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4. 13(토) 11:00
 - 장 소 : 대구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 경주 왕의 길 신라로 체험식 참석
 - 일 시 : 2013. 4. 13(토) 18:00
 - 장 소 : 경주보문 선덕여왕 공원
 - 참 석 : 이 달, 최우섭 의원
- 경북 생명의 숲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4. 13(토)
 - 장 소 : 포항 하수처리장
 - 참 석 : 장경식 의원
- 4대 사회악 뿌리뽑기 결의 및 방법가족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14(일) 10:30
 - 장 소 : 김천 KT&G
 - 참 석 : 송필각 의장, 나기보·배수향 의원
- 여중군자 장계향 표준영정지정 발표회 참석
 - 일 시 : 2013. 4. 15(월) 11: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한혜련 부의장, 박진현·채옥주 위원장, 고우현·이상용·장경식·김명호·박권현·장영석·이경임·이영식 의원

-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3. 4. 15(월) 15:00
 - 장 소 : 김천 어모면
 - 참 석 : 배수향 의원
-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참석
 - 일 시 : 2013. 4. 16(화) 11:00
 - 장 소 : 서울 롯데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영천경마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3. 4. 17(수) 14:30
 - 장 소 :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취임 축하 환영회 참석
 - 일 시 : 2013. 4. 17(수) 19:00
 - 장 소 : 포항 포스코국제관
 - 참 석 : 장두옥 위원장, 장경식·김희수 의원
- 2013 지방의회 의원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3. 4. 17(수) ~ 4. 19(금)
 - 장 소 : 대전시 유성호텔
 - 참 석 : 나현아 의원
- 동해안 염지하수 개발 산업화 방안 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13. 4. 18(목) 11:00
 - 장 소 : 울진 해양레포츠센터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본부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참석
 - 일 시 : 2013. 4. 18(목) 11:00
 - 장 소 : 영주 풍기인삼시장
 - 참 석 : 김종천 의원
-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3. 4. 18(목) 13:30
 - 장 소 : 전남 광양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4. 19(금)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한재석 의원
-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4. 19(금) 11:00
 - 장 소 : 안동 탈춤공연장
 - 참 석 : 송필각 의장, 이상용·김명호·홍광중 의원
- 제53주년 4·19민주혁명 대구경북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4. 19(금) 11:00
 - 장 소 : 김천고등학교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나기보·배수향 의원
- 제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4. 20(토) 14:00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배수향 의원

- 제51회 도민체전 성공기원 시민건강걷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20(토) 16:00
 - 장 소 : 김천 종합운동장
 - 참 석 : 나기보·배수향 의원
- 제5회 자전거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4. 21(일) 10:30
 - 장 소 : 구미 동락공원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윤창욱·김봉교·심정규 의원
- (주)PNDT 공장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3. 4. 22(월) 10:00
 - 장 소 : 영천첨단부품소재 산업지구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김희수 의원
- (사)세계평화여성연합 경북도지부장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4. 23(화) 10:30
 - 장 소 : KT경주수련관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자원봉사 재능나눔 「찾아라! 경북행복마을!」 만들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4. 23(화) 11:30
 - 장 소 : 청도 풍각 화산마을
 - 참 석 : 김하수 의원

-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3. 4. 24(수) 10:00
 - 장 소 : 도청 제2회의실
 - 참 석 : 이태식 의원
- 뿌리산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 입학식 참석
 - 일 시 : 2013. 4. 24(수) 11:00
 - 장 소 : 경북직업전문학교
 - 참 석 : 김희수 의원
- 산림청 산림복지나눔숲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3. 4. 24(수) 14:00
 - 장 소 : 칠곡 석적 성곡리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희원 의원
- 성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13. 4. 24(수) 14:30
 - 장 소 : 성주 종합사회복지관
 - 참 석 : 박기진 · 정영길 의원
- 경상북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3. 4. 24(수) 15:30
 - 장 소 : 도청 제2회의실
 - 참 석 : 교우현 · 이상용 의원
-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 참석
 - 일 시 : 2013. 4. 24(수) ~ 4. 25(목)
 - 장 소 : 성주 가야산호텔
 - 참 석 : 정영길 · 곽광섭 의원

- 2013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여성지도자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25(목) 11:00
 - 장 소 : 광주 염주체육관
 - 참 석 : 이경임 의원
- 포항과학기술고 개축공사 안전지원제 참석
 - 일 시 : 2013. 4. 25(목) 14:00
 - 장 소 : 포항 구룡포중·포항과학기술고
 - 참 석 : 김원석·이정호 의원
- 의성조문국 박물관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13. 4. 25(목) 14:20
 - 장 소 : 의성 금성면 조문국박물관
 - 참 석 : 나현아·이왕식 의원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개원식 참석
 - 일 시 : 2013. 4. 25(목) 15:00
 - 장 소 : 안동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채옥주 위원장,
김명호·박태환·이영식·홍광중 의원
- 제4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3. 4. 26(금) 17:00
 - 장 소 : 경상북도교육청
 - 참 석 : 송필각 의장, 최우섭·추재천 의원

- 2013 문경전통찾사발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4. 27(토) 14:00
 - 장 소 :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 참 석 : 이시하·고우현·이경임 의원
- 친서민 생활안전지킴이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4. 29(월) 14:30
 - 장 소 : 경산시청 대강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 2013 근로자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5. 1(수) 10:30
 - 장 소 : 칠곡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 글로벌 새마을청년봉사단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5. 1(수) 14:00
 - 장 소 : 구미 경운대학교
 - 참 석 : 송필각 의장, 이태식 의원
- 도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 일 시 : 2013. 5. 2(목) 11:40
 - 장 소 : 의회 의장실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김희수 의원

【시·군 단위 행사】

- 칠곡군 복성·교리 기업인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 일 시 : 2013. 3. 27(수) 11:30
 - 장 소 : 칠곡 약목면사무소
 - 참 석 : 김희원 의원
- 상주시 산림조합청사 및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3. 3. 27(수) 14:00
 - 장 소 : 상주 산림조합
 - 참 석 : 한재석 의원
- 제40회 상공인의 날 시상식 및 목요조찬회 참석
 - 일 시 : 2013. 3. 28(목) 07:30
 - 장 소 : 구미 상공회의소
 - 참 석 : 구자근 의원
- 제16회 영덕대게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3. 28(목) 10:00
 - 장 소 : 영덕 강구항 일원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3. 3. 29(금) 11:00
 - 장 소 : 영양 종합복지회관
 - 참 석 : 이상용 의원

- 새누리당 예천군 당정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3. 3. 29(금) 17:00
 - 장 소 : 예천군청 회의실
 - 참 석 : 도기욱 의원
- 도민체전출전 포항시 결단식 참석
 - 일 시 : 2013. 4. 2(화) 14:0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김희수 의원
- 성주군 초전면 대장1리 경로당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3. 4. 2(화)
 - 장 소 : 대장1리 경로당
 - 참 석 : 박기진 의원
- 경북농민사관학교 포항시 수료자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3. 4. 3(수) 11:00
 - 장 소 : 포항 티파니웨딩
 - 참 석 : 이정호·한창화 의원
- 봉화 봉성면 봉양교회 경로잔치 참석
 - 일 시 : 2013. 4. 3(수) 11:00
 - 장 소 : 봉화 봉성마을회관
 - 참 석 : 권영만 의원
- 제21회 군위군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4(목) 10:00
 - 장 소 : 군위 일연공원
 - 참 석 : 홍진규 의원

- 제22회 구미 봄길축제 참석
 - 일 시 : 2013. 4. 4(목) 11:00
 - 장 소 : 구미 금오산
 - 참 석 : 이태식 의원
- 성주 효요양병원 이전확장 개원식 참석
 - 일 시 : 2013. 4. 5(금) 10:00
 - 장 소 : 성주 효요양병원
 - 참 석 : 정영길 의원
- 울릉군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6(토) 10:00
 - 장 소 : 울릉 학생체육관
 - 참 석 : 이용진 의원
- 제21회 LG주부배구대회 송정동선수단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4. 6(토) 14:00
 - 장 소 : 구미 금오고등학교
 - 참 석 : 윤창욱 의원
- 제11회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7(일) 09:00
 - 장 소 : 영주 시민운동장
 - 참 석 : 김종천 의원
- 구미 제3회 해평면장기 타기 축구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7(일)
 - 장 소 : 해평중,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운동장
 - 참 석 : 변우정 의원

-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4. 8(월) 11:00
 - 장 소 : 올진 귀빈예식장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황이주 의원
- 경주 안강 제1기노인대학 입학식 참석
 - 일 시 : 2013. 4. 9(화) 10:00
 - 장 소 : 경주 안강노인대학
 - 참 석 : 최학철 의원
- 안동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3. 4. 9(화) 14:00
 - 장 소 : 안동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 참 석 : 이영식·김명호 의원
- 김천교육청 학생안전자원봉사자 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3. 4. 10(수)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배수향 의원
- 예천장애인협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4 .11(목)
 - 장 소 : 예천 문화회관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 제2회 문경 간호사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3. 4. 12(금) 16:00
 - 장 소 : 문경 제일병원
 - 참 석 : 이시하 의원

- 경주 벚꽃 마라톤 전야제 참석
 - 일 시 : 2013. 4. 12(금) 18:00
 - 장 소 : 경주 더케이호텔
 - 참 석 : 최우섭 의원
- 포항 다소리세오녀(다문화가족) 합창단 감사음악회 참석
 - 일 시 : 2013. 4. 12(월) 19:3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김원석 의원
- 금오산 정상반환 기념 등반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13(토) 09:00
 - 장 소 : 구미 금오산 잔디광장
 - 참 석 : 김봉교 의원
- 포항시 북구 장량동 한마음 걷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13(토) 09:30
 - 장 소 : 장량동 주민센터
 - 참 석 : 장세현 의원
- 제2회 경산 농산물사랑 반곡지 복사꽃길 걷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13(토) 10:00
 - 장 소 : 경산시 남산면 상대온천
 - 참 석 : 김창숙·서정숙·윤성규 의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농구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13(토) ~ 4. 14(일)
 - 장 소 : 의성체육관
 - 참 석 : 나현아 의원

- 포항시 새마을회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참석
 - 일 시 : 2013. 4. 16(화) 11:3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김말분 의원
- 경산시 장애인의 날 및 재활증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17(수) 11:00
 - 장 소 : 경산 실내체육관
 - 참 석 : 김영식 의원
- 2013년 청도소싸움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4. 17(수) 14:00
 - 장 소 : 청도 소싸움경기장
 - 참 석 : 김하수·박권현 의원
- 제16주년 영덕군민의 날 기념식 및 제26회 복사꽃 큰잔치 참석
 - 일 시 : 2013. 4. 17(수)
 - 장 소 : 영덕 군민운동장
 - 참 석 : 김기홍 의원
- 월남참전자회 안보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18(목) 10:00
 - 장 소 : 김천 환경공원
 - 참 석 : 나기보 의원
-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4. 18(목) 11:00
 - 장 소 : 문경 시민문화회관
 - 참 석 : 이경임 의원

- 안동교육지원청 과학축전 참석
 - 일 시 : 2013. 4. 19(금) 09:30
 - 장 소 : 안동 교육지원청
 - 참 석 : 홍광중 의원
- 고령새마을회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19(금) 10:00
 - 장 소 : 고령 생활체육공원
 - 참 석 : 박광섭 의원
-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4. 19(금) 10:00
 - 장 소 : 포항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장두옥 위원장, 장경식 의원
- 안정농협 자재센터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3. 4. 20(토) 11:00
 - 장 소 : 영주 안정농협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 제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4. 22(월) 11:00
 - 장 소 : 청송 군민회관
 - 참 석 : 김영기 의원
- 문경 전통찻사발아가씨 선발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22(월) 14:00
 - 장 소 : 문경 문화아트홀
 - 참 석 : 고우현 의원

- 2013학년도 구미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총회 참석
 - 일 시 : 2013. 4. 22(월) 15:20
 - 장 소 : 구미 교육지원청
 - 참 석 : 박태환 의원
-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4. 23(화) 10:0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장영석 의원
- 2013 경주시 학교운영협의회 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3. 4. 23(화)
 - 장 소 : 경주 건강주민센터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경산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3. 4. 25(목) 11:00
 - 장 소 : 경산 자인면 계정숲
 - 참 석 : 김세호 의원
- 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3. 4. 25(목) 11:30
 - 장 소 : 칠곡 상공회의소
 - 참 석 : 추재천 의원

- 의성 조문국박물관 개관식 참석
 - 일 시 : 2013. 4. 25(목) 14:00
 - 장 소 : 의성 조문국박물관
 - 참 석 : 이왕식 의원
- 제10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3. 4. 26(금) 15:30
 - 장 소 : 영천 보현산천문과학관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정무공 최진립 장군 동상 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4. 27(토) 10:00
 - 장 소 : 경주 충이공원
 - 참 석 : 이 달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3년 5월 2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용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울릉공항 건설 및 독도 실효적 지배와 관련>>

존경하는 송필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릉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용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울릉공항 및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국가 정책의 난맥상과 독도주변 해역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독도기점 2M/L 이내 자망, 통발 조업금지 구역 설정 문제입니다.

먼저 울릉공항의 건설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국가 영토수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논리에 치우쳐 공항건설 타당성 검토를 시작한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울릉공항 건설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울릉도 독도는 환동해의 중심선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러시아, 일본, 북한 등 환동해 각국의 군사정보수집 전진 기지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분야에서는 해상기상악화로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연간

100회 이상 결항되는 가운데에서도 세계 10대 휴양관광지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연간 관광객이 실인원 35만명/연인원 100만 명이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수준의 해양 도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양산업분야에서는 환동해의 무진장한 해양수산 자원을 선점하기 위하여 환동해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심층수 개발, 울릉도·독도 해양자원 연구센터 건립, 독도해양 과학기지 건설과 미래의 자원인 하이드레이트 개발 등을 위한 기반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릉도, 독도의 중요성과 역할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울릉공항 건설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과제라 판단합니다. 울릉공항의 필요성과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는 밀접한 관계이므로 독도 영유권 논쟁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으며 명확히 결정할 시기라 판단됩니다.

일본의 망상된 야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결연한 대책과 실행만이 필요시 되고 지금 일본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실효적 지배와 독도 방어를 위한 울릉도, 독도 개발사업이라 분석되며 울릉도, 독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만이 독도수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응책이며 범국민적인 독도수호의지와 독도를 지키고 가꾸는 경북도민과 울릉군민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독도주변해역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독도기점 2마일 이내 자망, 통발 조업 금지구역 설정 문제입니다.

독도주변 해역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

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으로, 독도주변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합니다.

회유성 어족인 오징어, 한치, 꽁치, 방어, 볼락, 가오리, 복어, 대게 새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철인 가을에서 겨울철엔 오징어 집어 등의 밝은 불빛이 독도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합니다. 또한 해저 암초에는 미역, 김, 대황, 해삼, 소라, 전복, 문어, 홍합 등의 수산 동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지만, 최근 들어 지구의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수온, 조류 등의 변화로 독도 연안 수산물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독도마을 및 협동양식어장에서의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85톤, 2011년 38톤, 2012년 16톤 정도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해양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망, 통발 어업으로 인한 자원의 남획과 연안에 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서식환경 훼손 및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매년 울릉청년단 회원들이 수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침적된 폐어구를 수거할 수 있는 회원들의 행사 지원 대책도 필요하며 독도연안의 수산자원 번식보호 대책 등으로 독도를 기점으로 1~2마일 이내 자망, 통발조업을 금지토록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요구하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경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치매환자 등 요양등급 외 어르신에 대한 복지정책 개발 촉구>>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령 사회의 도래에 따라 보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 등의 어르신에 대한 정책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의 고령화율(2012년 12월말 기준)은 16.2%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쯤 고령화율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심화는 치매환자의 급증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수도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을 보면, 2013년을 기준 9.2%로 56만
5천명(56만 5천명/589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0년
79만명,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중 약 15만명만이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3월 기준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24,202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5%(24,202명/437,519명)로

나타나고 있으나, 치매유병률 9.2%를 적용해 보면, 약 2배에 이르는 40,252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3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요양 등급을 신청한 경북도민은 48,664명에 이르지만, 25,105명(51.6%)만 요양등급을 받고, 13,227명(27.2%)은 등급을 받지 못하여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내에는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13개소, 민간 요양병원 71개소, 요양시설 29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8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치매환자 중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과 요양 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13,227명과, 치매유병률 9.2%를 적용한 40,252명의 치매환자 중 등록되지 않는 16,041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비 부담 과중으로 요양병원 이용이 어렵고, 전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여, 시설보호나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북도는 25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운영되어, 치매 조기 검진, 3만원 범위내의 치료비 지원, 치매 예방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치매환자 보호와 생활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고,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시설과 서비스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경시를 예로 보면(2012년말 기준), 등록된 치매환자는 1,256명중 요양시설 입소 315명, 병원입원 282명, 재가서비스 119명만이 이용하고, 나머지 540명(치매등록 환자의 43.0%)은 보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전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서 만나본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은 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종합지원센터 및 주간·단기 보호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효”를 최고의 사회적 가치로 여겼던 우리 조상들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만큼 어르신들이 겪는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은 자식이나 가족이 돌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보호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 파악과, 이용할 수 있는 치매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기존 시설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김말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책 관련 >>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말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도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3월 현재, 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인과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도내 교통약자가 82만 1,01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30%를 넘어섰습니다.

교통약자 중에서도 특히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3만 7,39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배려야말로 도민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핵심과제임에도 우리 경북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여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에 따르면, 시군 마다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용 콜택시로 대표되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체장애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경북도의 법정보유대수는 199대에 달하나 실제로 4대

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휠체어리프트가 장착 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총 101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정보유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마저도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예천, 봉화의 7개 지역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도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그냥 '홍보용'으로만 기능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전국 저상버스가 3,828대로 도입률 11.8%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북도는 24대로 도입률 2%에 그치고 있어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 저상버스 도입의 차이도 매우 심각하여 도내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볼 때 과연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지 햇수로 8년에 이르는 동안 도대체 우리 경북도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도입대수는 교통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일 뿐인데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몇 대 도입해 놓고 생색만 내는 것이 지금 우리 경북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의 도입책임이 있는 각 시·군의 적정도입대수 확보를 위한 도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군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저상버스와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는데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도차원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특별교통수단 도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교통수단 운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타 시·도의 경우, 운행시간을 24시간으로 운영한다든지 최소한 밤 10시까지 운행하고 연락체계에 있어서도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세심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경북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연락체계 역시 사전 예약이나 전화로만 이루어질 뿐으로 콜센터 운영이 전무하고 또한, 타지역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동권의 확보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권리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정책으로 이어질 때, 향후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은 그만큼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도산별시, 도백이 주관하는 대통령상 행사로 격상돼야>>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년간 이어져온 도산별시를 도백이 주관하고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한시백일장 <도산별과>로 격상시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산서원 아래 안동호에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인 시사단(試士壇)입니다. 조선 정조 16년에 지방별과(地方別科)를 치렀던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과 비각이 서 있습니다.

퇴계선생이 타계한 지 222년이 되던 1792년, 정조대왕은 선생의 학덕(學德)을 추모하기 위해 규장각 각신(閣臣) 이만수(李晩秀)를 도산서원에 보내 임금이 친히 지은 제문(祭文)으로 치제(致祭)케 했습니다.

또한 서원 앞 송림(松林)에서 과거를 치러 영남인재를 선발케 했는데, 이것이 한양을 벗어난 곳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도산별과(陶山別科)였습니다. 무려 1만여 명의 유생이 모여들었고, 7,228명이 응시하여, 3,632명이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수효는 당시의 인구와 교통통신상황을 감안할 때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북정체성의 한 단면입니다.

이 답안지는 밀봉되어 규장각으로 보내졌는데, 정조대왕이 친히 채점을 하여 강세백(姜世白, 1748~1824)과 김희락(金熙洛, 1761~1803)을 장원급제자로 선발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1796년에 정조대왕은 그 자리에 단을 모으고 비각을 세우게 했습니다. 당시에 비각은 송림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송림은 사라졌고, 비각은 지상 10m 높이로 승상(嵩上)된 단 위에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리고자 1993년에 안동의 뜻있는 인사들이 나서서 도산별시(陶山別試)라는 이름으로 한시백일장을 개최해온 지 스무 해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한시 동호인들이 참여하여 도포와 유건 등 전통복장을 갖추어 입고 치르는 도산별시는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전승하는 매우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퇴계선생의 학덕과 사상을 경모(敬慕)하고,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한시에 대한 재인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유교문화의 본향인 지역의 정신문화를 널리 떨치는 장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2014년은 우리 도민에게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1314년에 '경상도'라 명명한지 700년이 되는 해이고, 역사적인 신도청 시대의 서막을 올리는 해입니다.

또한 정조대왕이 도산별과를 시행한지 222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퇴계선생이 타계한 지 222년만에 도산별과가 치러졌고, 그로부터 다시 222년이 되는 뜻 깊은 해가 바로 2014년입니다. 이제 몇몇 인사와 단체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오던 도산별시를 도백이 주관하는 품격 높은 행사로 재탄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절히 엮어내고, 시상(施賞)의 규모와 품격을 한껏 높여서, 정조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장원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한시 백일장 <도산별과>로 격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문화융성과 정신문화를 특별히 강조하여 언급하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부합될 것입니다. 특히 탕평정치를 추구한 정조대왕이 영남인재를 선발하고자 실시했던 도산별과는 국민통합이 절실한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 천년의 새 도읍지를 열어 웅도대도호부의 위상을 확립하고, 자랑스러운 경북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과시하여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서의 경북을 재창조하겠다는 미래 어젠다를 선도하고 계시는 지사님의 비전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깊은 관심에 힘입어 또 하나의 획기적인 문화콘텐츠가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2013년 5월 1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김영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공로연수제 폐지 및 정년연장 검토 관련>>

경산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생활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문제는 우수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성과와 능력위주의 인사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것 외에 그 무엇보다 도민으로부터 이해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지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사회적응 및 재취업프로그램을 연수한다는 명분아래 시행되고 있지만 도민들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0년부터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는 이제 시대가 바뀌고 행정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아직도 체계화된 연수프로그램도 변변하게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취지는 변질되어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위도식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해 6~7천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도민들에게는 예산낭비사례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경북도의 경우 최근 3년간 공로연수제 시행인원과 그에 따른 급여를 살펴보면 2011년 17명에 10억 9,297만원, 2012년 14명에 9억 1,994만원으로 2013년 상반기 현재까지는 8명에 5억 3,035만원 등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9명의 연수인원에 드는 비용이 25억 4,328만원에 이르러 1인당 평균 6,52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주는 것은 우리들의 사회적 정서와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 부머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2014년도에 명예퇴직 등으로 다소 변동이 있겠지만 공로연수제 시행예상 인원이 22명, 2015년 32명, 2016년 38명, 2018년에 65명 등에 이를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부처에서는 공로연수제가 거의 사라졌으며 공로연수제로 인하여 예산 낭비는 물론 총액 인건비제에 따라 직원 충원도 여의치 않아 업무 공백이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로연수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에 공로연수제에 드는 소요 예산을 사회봉사 프로그램 또는 재취업기금으로 조성하여 퇴직공무원의 재취업기회를 확대해나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공로연수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폐지되지 않는 이상에는 다음 후배 승진자들의 눈총이 따가워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형편

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공로연수를 마치고 다시 퇴임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공로 연수제가 폐지된다면 정년퇴임식을 후배들의 박수 속에 명예롭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임금피크제'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의학의 발달과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더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영국, 독일, 일본 등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65세 이상을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향후 법이 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우리 도에서 먼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도를 병행해서 시범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상용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농어촌 소규모학교 사업 내실화 촉구 >>

영양 출신 이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2회 스승의 날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북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어촌 지역 특히 면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내실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의 면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은 이영우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60명 이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2013년 기준 22개교 5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60명 이하 초등학교 236개교 중 초등학교 18개교(7.6%), 중학교 114개교중 4개교(3.5%)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도 교당 학교당 연간 2천4백만원입니다.

경북교육청에서 2013년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 등 총 18개교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0명 이하 중학교를 대상으로는 11개지역 45교 개교를 통·폐합하여 기숙형 중학교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중 아직까지 통합이 합의된 학교는 단 1개교도 없습니다. 통·폐합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학생수 6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에서는 통·폐합 대상 학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연중돌봄학교'로 지정되어 방과후 학습과 야간자율학습, 하교차량 등을 지원받던 학생들은, '연중 돌봄학교' 사업이 2011년 종료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생수가 60명 이하라는 이유로 '전원학교'로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에서는 제외되어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중돌봄학교 사업'을 지원받던 학교는 방과 후 학습지도와 야간자율학습 후 차량지원 까지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 이어진 '전원학교'사업에서는 차량지원이 없습니다. 그동안 지원받는 방과후와 야간자율학습 후 차량지원이 2013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차량을 지원받던 학생들의 경우, 방과후 또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싶어도 하교할 차량이 없어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면지역은 변변한 사교육기관이 없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공교육만에만 의존하는 학부모의 경우, 한창 바쁘게 일할 시간에 일을 멈추고 자녀하교에 나서야 합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신청을 하면 야간자율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차량이 없는데, 어떻게 야간자율학습을 하라는 말입니까?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사는 조손세대 학생의 경우, 차량지원이
없이는 야간자율학습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농번기에 접어든 농촌지역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자녀가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까지 일을 하거나 일꾼을 실어 나르는
등 매우 바쁜 시간입니다.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하교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면지역의 경우 6시 이후는
대중교통인 버스 운행이 종료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4년 임기의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영우 교육감의 명품교육이 경상북도 교육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학생은, 이영우 교육감의 명품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면단위에 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선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절망하게 됩니다. 면단위 지역 소규모학교의
방과후 또는 토요학교, 야간자율학습 등에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차량운행이 되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
하지는 않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6월 추경에 긴급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을 통·폐합 전까지 60명 이하의
모든 면단위 학교에 지원하여, 교육기회 확보와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농어촌 면지역은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관해서는 오로지 일선학교만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면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세세한 정책추진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경북교육이 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해련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재조명 및 마상제 축제관련>>

영천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해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은커녕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라고 바꿔 부르고 왜곡된 역사책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최근 아베 총리의 침략 역사 부정,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그 망언과 망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근시안적이고 반역사적인 꾀수는 일본의 미래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며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고유의 영토를 일본 영토로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 내에서도 지난 역사에 대해 반성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며 북핵문제와 세계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급속한 우경화로 경색되고 있는 한·일 양국의 관계회복을 위한 방안이 일부나마 모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질적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2015년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으로 조선통신사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 간 12차례 이루어진 한·일 선린 외교로 조선과 일본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한일문화교류의 시발점입니다. 조선통신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조선시대 통신사가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간의 정치적 갈등을 풀고 평화를 도모한 것과 같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일문화교류의 꽃을 피우며 평화의 세기를 이끌어왔던 조선통신사 문화사업은 일본에서는 이미 지역과 국가적 축제로 자리 잡았고 부산의 경우 2003년부터 매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통신사의 여정을 살펴보면 출발지인 송례문부터 부산까지는 육로를 이용하였는데 우리 경북지역에는 지난 2007년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에서 전국 12곳에 조선통신사의 길이라는 표지석을 세우기도한 곳으로 문경, 안동, 의성, 영천, 경주를 지나간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를 타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는 통신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자 한양에서 출발한 사행원과 지역에서 선발된 사행원들이 모이는 2차 집결지가 바로 영천으로 경상감사가 주척하는 국가차원의 전별연(餞別宴)과 마상재(馬上才) 공연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경상감사가 조선통신사 사행원들에게 배풍 전별연은 악공의 연주와 기생의 가무가 어우러져 영천의 조양각에서 진행되었고 말을 타고 다양한 기술을 부리는 사람

이나 기예를 뜻하는 마상재는 「무예도보통지」에도 수록된 조선무예 24가지 기예중의 하나로 조양각 맞은편 금호강변에서 펼쳐져 관람객과 장사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지역축제의 장이 마련되기도 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일양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조선통신사 등재를 추진하는 것에 발맞추어 경상북도차원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이 지나간 길을 한·일문화 실크로드로 재조명하여 양국 문화교류의 역사를 복원하고 그 옛날 경상삼사가 직접 주관하여 영천 조양각 일원에서 전별연과 마상재가 펼쳐진 것처럼 도지사가 직접 관장하는 마상재를 중심으로 지역축제를 복원하는 방안을 도모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선통신사에 대한 재조명과 영천지역의 마상재 축제복원은 한일양국의 문화교류는 물론 아시아평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기틀로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며, 아울러 제4경마공원을 비롯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간에는 독도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지금에 조선시대 조선통신사가 만들어낸 한일 관계의 역사적 의미는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시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물론 공생공존 하는 한일양국 미래 관계를 위한 경상북도차원의 정책적 검토를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 록



- 조례안 : 13건

조 례 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5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본운영”으로, 제2호 중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로 하고, 제3호 중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본운영”으로, 제2호 중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로, 제3호 중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로, 제4호 중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으로, 제5호 중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사항”을 “구조·구급활동”으로, 제6호 중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치·운영”으로, 제7호 중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소방교육·훈련”으로, 제8호 중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치·유지관리”로, 제9호 중 “홍보에 관한 사항”을 “홍보”로 하고, 제12호 중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을 “화재조사”로 한다.

제33조 중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119안전센터·119구조대 및 119구조구급센터”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해동로 376”을 “홍해읍 영일만항로 111-1”로 한다.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포항북부소방서 관할구역란 “포항시 북구 일원, 영덕군 일원”을 “포항시 북구 일원”으로 하고, 의성소방서란 다음에 영덕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덕소방서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u>기본운영에 관한 사항</u> 2. 직원 <u>인사관리</u> 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및 시설의 <u>유지관리</u> 에 관한 사항 4. ~ 10. (생략)	제29조(소관사무) 1. <u>기본운영</u> 2. <u>인사관리</u> 3. <u>유지관리</u> 4. ~ 10. (현행과 같음)
제32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u>기본운영에 관한 사항</u> 2. 소방공무원 <u>인사관리</u> 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및 공유재산의 <u>유지관리</u> 에 관한 사항 4. 소방업무에 관한 <u>종합계획의 시행</u> 에 관한 사항 5. 화재의 진압 및 <u>구조·구급활동</u> 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의 <u>설치·운영</u> 에 관한 사항 7. 특정소방대상물 및 관계인에 대한 <u>소방교육·훈련</u> 에 관한 사항 8. 소방용수시설의 <u>설치·유지관리</u> 에 관한 사항 9. 화재의 예방 및 <u>홍보</u> 에 관한 사항 10. ~ 11. (생략) 12. <u>화재조사</u> 에 관한 사항	제32조(소관사무) 1. <u>기본운영</u> 2. <u>인사관리</u> 3. <u>유지관리</u> 4. <u>시행</u> 5. <u>구조·구급활동</u> 6. <u>설치·운영</u> 7. <u>소방교육·훈련</u> 8. <u>설치·유지관리</u> 9. <u>홍보</u> 10. ~ 11. (현행과 같음) 12. <u>화재조사</u>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5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4,976명”을 “5,08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01명”을 “1,909명”으로, 제2호 중
“2,934명”을 “3,033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합계란 “4,976”을 “5,083”으로, 일반직 소계란
“1,446”을 “1,454”로, 일반직 3~4급 중 합계란 “1”을 “2”로,
본청란 “1”을 “2”로, 일반직 4급 중 합계란 “74”를 “73”으로,
본청란 “53”을 “52”로, 일반직 5급 이하 합계란 “1,359”를
“1,367”로, 소방직 소계란 “2,934”를 “3,033”으로, 소방직
소방정 중 합계란 “19”를 “20”으로, 직속기관란 “16”을 “17”로 하고,
소방령 이하란 “2,915”를 “3,013”으로 한다.

별표 4 중 일자리경제본부의 존속기한란 “2013. 6. 30”을
“2013. 12. 3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원 정원의 총수는 4,976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901명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 공무원의 정원 : 2,934명
3. (생략)
4. (생략)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u>4,976</u>					
일반직	소 계	<u>1,446</u>					
	3~4급	<u>1</u>	<u>1</u>				
	4 급	<u>74</u>	<u>53</u>	<u>7</u>	<u>5</u>	<u>9</u>	
	5급 이하	<u>1,359</u>					
소방직	소 계	<u>2,934</u>					
	소방정	<u>19</u>	<u>3</u>		<u>16</u>		
	소방행정 이하	<u>2,915</u>					

[별표 4]

한 시 정 원 표

기관별	정원		존속 기한	비 고
	계	내역		
일자리 경제본부	2	일반직 : 5급 이하 2	<u>2013.6.30</u>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5,083.....
.....

1. : 1,909...
2. : 3,033...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u>5,083</u>					
일반직	소 계	<u>1,454</u>					
	3~4급	<u>2</u>	<u>2</u>				
	4 급	<u>73</u>	<u>52</u>	<u>7</u>	<u>5</u>	<u>9</u>	
	5급 이하	<u>1,367</u>					
소방직	소 계	<u>3,033</u>					
	소방정	<u>20</u>	<u>3</u>		<u>17</u>		
	소방행정 이하	<u>3,013</u>					

[별표 4]

한 시 정 원 표

기관별	정원		존속 기한	비 고
	계	내역		
일자리 경제본부	2	일반직 : 5급 이하 2	<u>2013.12.31</u>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5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산업디자인 및 관련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디자인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디자인”이란 지식 및 창조성의 집약도가 높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교부가가치의 지식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라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디자인전문기업”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 디자인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2.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 사업
3. 디자인전문기업 역량 강화 사업
4. 디자인 교육 및 행사의 기획, 홍보, 실행에 관한 사업
5. 디자인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의 육성·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물의 설치)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연구기관
2. 디자인전문기업 집적시설
3. 산업디자인 전시장, 역사관, 박물관
4. 산업디자인 전문기업 창업
5. 공용기기실
6. 디자인 정보센터
7. 산, 학, 연, 관 교류협력사업 관련 선정기관
8. 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산업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2.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①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심의, 조정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내용 중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
2. 산업디자인 등의 지원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
3. 그 밖의 산업디자인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본부장이 된다. 단, 위원중 여성은 30% 이상으로 하고 외부 위원이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학계 또는 상공업계의 인사 중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위촉되는 위원 중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디자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디자인담당 본부·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6조제2항관련 통상적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특화기관 운영지원) ①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지역 특화기관 및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역 특화기관 및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2. 디자인 전시사업
3. 디자인 교육·연수사업
4.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5. 디자인분야 국제교류·협력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운영의 위탁 등)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등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5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쉼터”란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
(이하 “피해노인”이라 한다)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경상북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법 제39조의6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

보호전문기관을 두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의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 의뢰
3. 노인학대 사례 및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4.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5.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6.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특수업무수당의 지급)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게 위험근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대피해노인 쉼터운영) ①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피해노인 컴퓨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의 실시)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노인, 노인부양가족 및 일반 도민의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5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보호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생활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의 심신 안정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와 안정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제5조(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 사업) ①도지사는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2. 가정 및 학업 복귀를 위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3. 또래집단 및 교우관계 향상을 위한 사회관계훈련
4.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5.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6. 그 밖에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도지사는 제1항의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계획수립·시행) ①도지사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법」 제16조의 청소년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과 가정·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유형
3.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4.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의료복지에 관한 사항
5.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6.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7.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또래집단 및 사회관계망 형성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법」 제9조의 지역 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5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도민을 간접흡연으로
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경상
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구역과
도지사가 지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환경 조성 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도지사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경영자, 사업주 등 근로자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금연에 노력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기관 금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및 비흡연자를 포함
하여 다수가 모인 곳에서는 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금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북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도민들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①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의 상담·치료를 위하여 시·군 보건기관을 통한 상담·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흡연의 위험성 경고) 도지사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흡연 피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주민계몽
2.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범도민 금연운동
3. 금연정책 포럼 운영

제12조(평가) ①도지사는 해당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5월 2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따라 원만한 사무 집행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 안 제2조제2호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으로 함.
- 안 제3조의 “도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금연 구역”을 “도지사가 지정한 금연구역”으로 함.
- 안 제4조제1항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제3항의 “도내에 설치된 금연시설과 프로그램”을 “보건기관 금연 프로그램”으로 함.
- 안 제14조를 안 제15조로 하고, 안 제14조 권한위임 규정을 신설함.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2호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으로 함.
- 안 제3조의 “도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금연 구역”을 “도지사가 지정한 금연구역”으로 함.
- 안 제4조제1항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고, 제3항의 “도내에 설치된 금연시설과 프로그램”을 “보건기관 금연 프로그램”으로 함.
- 안 제14조를 안 제15조로 하고,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4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u>경상북도</u>(이하 “도”라 한다) <u>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u>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경상북도지사</u> (이하 “<u>도지사</u>”라 한다)가 <u>금연을 지정한 구역</u> _____.	금연구역에 대한 표현을 쉬운 문안으로 정리함.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u>금연구역과 도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금연구역</u> 및 <u>금연환경 조성 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u>한다.	제3조(적용범위) _____ _____ _____ <u>도지사가 지정한 금연구역</u> _____ _____ _____.	선행조문 수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내에 설치된 금연시설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및 비흡연자를 포함하여 다수가 모인 곳에서는 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도지사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②(제정안과 같음) ③_____ _____보건기관 금연 프로그램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도내에 설치된 금연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나열된 공공청사, 의료기관 등 모든 금연건물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규정함. 민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금연 프로그램 이용의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 금연프로그램으로의 수정이 필요함.
(신설)	안 제14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과태료 사무의 시·군 권한위임 규정 신설
제14조(시행규칙)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5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5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심의)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창작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도지사는 도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전부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활한 시행 도모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5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마.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으로 신설하고,

제7호 중 “기술제안 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제8호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설계 공모·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⑧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중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전에 용역(하도급을 포함
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로 하고

제2호 중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를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로 하고

제3호 중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를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로 하고

제4호 중 “그 밖에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로 한다.

제5호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제6호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7호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8호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⑧항 “도지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과 설계심의분과 위원회 위원 및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명단을 기관에서 구성·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 제④항 중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27조 제①항 3호 중 “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4호 중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29조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③항 “발주청장은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감점에 제②항

과는 별도로 별표 2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①항제1호 중 “설계평가회의 7일전”을 “기술검토회의 2일전”으로 하고, 제2호 중 “설계평가회의 7일전”을 “기술검토회의 5일전”으로 하고, 제3호 중 “설계평가회의 10일전”을 “기술검토회의 5일전”으로 하고, “설계평가회의 개최당일”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전일”로 하며 제④항 중 “입찰참가업체는 제③항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설계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①항 중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②항 중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심의 일까지 입찰참가업체가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를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로 하고,

제③항 중 “소위원장은 공동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조사할 수 있다.”를 “발주청장은 제①항 및 제②항 규정을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④항 중 “발주청장은 제21조제3호 자 목에 따른 선형 및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②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⑤항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제②항 중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를 “제30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제34조제④항 중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하고 제⑥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⑥항 “제27조제1항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심의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35조제①항 1호 나목 중 “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퍼센트 범위로 한다.”를 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 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②항 중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한다.”로 하고, 같은 항 1호 나목 “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퍼센트 범위로 한다.”를 “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

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③항 중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를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별표 2]

심의관련 비리감점(제29조 관련)

1. 적용기준

감 점 사 유	감점	감 점 기 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로부터 2년

2. 적용방법

-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 나.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라목(생략) 마. <신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라목(현행과 같음) 마. <u>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사항</u>
2.~6. (생략)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2.~6. (현행과 같음) 7. <u>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u> 8. <u>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u> <u>.....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u>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② (생략)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전에 <u>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현행	개정안
2. <u>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u>	2. <u>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u>	3. <u>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u>
4. <u>그 밖에 심의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5. <신설>	5. <u>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u>
6. <신설>	6. <u>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7. <신설>	7. <u>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8. <신설>	8. <u>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③~⑦ (생략)	③~⑦ (현행과 같음)
⑧ <신설>	⑧ <u>도지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및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명단을 기관에서 구성·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제17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①~③ (생략) ④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제17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촉한다.</u>
제27조(심의사항) ① (생략) 1.~2. (생략) 3. <u>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접수</u> 4. <u>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시 기술 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설계 적격여부와 설계접수</u>	제27조(심의사항) 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u> 4. <u>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u>
제29조(감점기준) ①~② (생략) ③ <신설>	제29조(감점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발주청장은 제31조제2항에 해당 하는 감점에 제2항과는 별도로 별 표 2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
제30조(기술검토) ① (생략) 1.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28조 의 제출서류 제한사항 위반에 대 한 감점사항과 입찰 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제27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심의 시에는 기본설계 시 반 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 토내용 및 심의 시 지적내용의 적 정반영 여부 포함) 및 설계검토서 등을 <u>설계평가회의</u> 의 7일 전까지 보고	제30조(기술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u>기술검토회의</u> 의 2일 전까 지

현행	개정안
2.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입찰업체간 질문사항 검토내용을 포함한다)을 <u>설계평가회의 7일 전까지</u> 서면으로 제출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u>설계평가회의 10일 전까지</u>,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및 소위원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u>설계평가회의 개최 당일 서면으로</u> 제출 ②~③ (생략) ④입찰참가업체는 제3항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을 면담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은 <u>입찰참가업체의 면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제31조(심의사항의 설명) ①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당일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개설명회 및 공동설명회시 당해 심의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 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도서형식에 따를 경우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u>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u>	2.<u>기술검토회의 5일 전까지</u>..... 3.<u>기술검토회의 5일전까지</u>,.....<u>설계평가회의 개최 전일 서면</u>..... ②~③ (현행과 같음) ④소위원장은 <u>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설계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설계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u> 제31조(심의사항의 설명) ①.....<u>금지</u> <u>하도록 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②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선정 일부터 심의 일까지 입찰참가업체가 개별적으로 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설> 2. <신설> 3. <신설> 4. <신설> ③소위원장은 공동설명회 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조사할 수 있다. ④발주청장은 제21조제3호 자 목에 따른 선형 및 위치 등이 확정된 공사의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신설>	②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신고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③발주청장은 제①항 및 제②항 규정을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②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33조(설계평가회의 운영) ①(생략) ②설계평가회의는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3조(설계평가회의 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제30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에 발생시에는 설계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심의의결) ①~③(생략) ④도지사는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⑤(생략) ⑥ <신설>	제34조(심의의결) ①~③(현행과 같음) ④.....,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⑤(현행과 같음) ⑥제27조제1항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1. 가. (생략)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 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 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 (생략)	제35조(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1. 가. (현행과 같음) 나.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 이내로 한다. 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및 가. (생략) 나.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후 전문분야별 차등평가 하되, 차등의 폭은 전문분야별 배점의 5~15 퍼센트 범위로 한다. 다. (생략) ③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 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신설되는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10.12. 31 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1. 및 가. (현행과 같음) 나.하거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하되 차등의 폭은 분야별 배점 또는 총점의 15% 이내로 한다. 다. (현행과 같음) ③.....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삭제〉

〈신설〉

[별표 2]

심의관련 비리감점(제29조 관련)

1. 적용기준

감 점 사 유	감점	감 점 기 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 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로부터 2년

2. 적용방법

-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 나.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5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를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제7조제2항 중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명 띄워쓰기
제6조(기금의 용도) (생략) 1.~9.(생략) 10. <신설>	제6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9.(현행과 같음)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반영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생략)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현행과 같음) ②_____	대피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생활안정 확보 (용자한도액의 현실화)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1.(생략)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재난관리에 관한 민간전문가 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5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886명”을 “5,25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원”을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373명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비율	2% 이내	8.5% 이내	33% 이내	44% 이내	12.5%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8% 이내	20% 이내	36% 이내	36% 이상

3.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 구 관	연 구 사
비율	-	100%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9급 상당
비율	25% 이내	-	75% 이상	-

5. 교육전문직원

구 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합 계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공립 각급학교
합 계		5,259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2,530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	17	1	
	5급 이하	2,504	-			
기 능 직	소 계	2,345	-			
	5급 이하	2,345	-			
연 구 직	소 계	6	-			
	연구사	6	-			
별 정 직	소 계	4	-			
	5급상당 이하	4	-			
교 육 전 문 직 원	소 계	37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48	-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32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19조, 제19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공무원의 정원”을 “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제19조, 제19조의2————— ————— ————— ————— —————.	제1조(목적) ————— ————— ————— ————— ————— ————— ————— ————— ————— —————.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886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4,881명 〈신설〉	제2조(정원의 총수) ————— ————— —————5,259명————— ————— —————. 1. (현행과 같음) 2. ————— —————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373명	제2조(정원의 총수)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 —————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373명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교육전문직원																																																																																																																																																																															
		<table border="1"> <tr> <td>구분</td><td>장학관· 교육연구관</td><td>장학사· 교육연구사</td></tr> <tr> <td>비율</td><td>30% 이내</td><td>70% 이상</td></tr> </table>		구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구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비율	30% 이내	70% 이상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개정안과 같음)																																																																																																																																																																													
<table border="1"> <tr> <th>기관별 직급별</th><th>합계</th><th>정장 특도 의회 사무 처</th><th>본청 (직속 기관)</th><th>지역 교육 청 (소속 기관)</th><th>공립 학교</th></tr> <tr> <td>합 계</td><td>4,886</td><td>-</td><td>-</td><td>-</td><td>-</td></tr> <tr> <td>정 무 직</td><td>1</td><td>-</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5">일 반 직</td><td>소 계</td><td>2,530</td><td>-</td><td>-</td><td>-</td></tr> <tr> <td>3 급</td><td>3</td><td></td><td>3</td><td></td></tr> <tr> <td>3~4급</td><td>4</td><td></td><td>4</td><td></td></tr> <tr> <td>4 급</td><td>19</td><td>1</td><td>17</td><td>1</td></tr> <tr> <td>5급 이하</td><td>2,504</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2">기 능 직</td><td>소 계</td><td>2,345</td><td>-</td><td>-</td><td>-</td></tr> <tr> <td>5급 이하</td><td>2,345</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2">연 구 직</td><td>소 계</td><td>6</td><td>-</td><td>-</td><td>-</td></tr> <tr> <td>연구사</td><td>6</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2">별 정 직</td><td>소 계</td><td>4</td><td>-</td><td>-</td><td>-</td></tr> <tr> <td>5급상당 이하</td><td>4</td><td>-</td><td>-</td><td>-</td></tr> </table>		기관별 직급별	합계	정장 특도 의회 사무 처	본청 (직속 기관)	지역 교육 청 (소속 기관)	공립 학교	합 계	4,886	-	-	-	-	정 무 직	1	-	-	-	-	일 반 직	소 계	2,530	-	-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	17	1	5급 이하	2,504	-	-	-	기 능 직	소 계	2,345	-	-	-	5급 이하	2,345	-	-	-	연 구 직	소 계	6	-	-	-	연구사	6	-	-	-	별 정 직	소 계	4	-	-	-	5급상당 이하	4	-	-	-	<table border="1"> <tr> <th>기관별 직급별</th><th>합계</th><th>정장 특도 의회 사무 처</th><th>본청 (직속 기관)</th><th>지역 교육 청 (소속 기관)</th><th>공립 학교</th></tr> <tr> <td>합 계</td><td>5,259</td><td>-</td><td>-</td><td>-</td><td>-</td></tr> <tr> <td>정 무 직</td><td>1</td><td>-</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5">일 반 직</td><td>소 계</td><td>2,530</td><td>-</td><td>-</td><td>-</td></tr> <tr> <td>3 급</td><td>3</td><td></td><td>3</td><td></td></tr> <tr> <td>3~4급</td><td>4</td><td></td><td>4</td><td></td></tr> <tr> <td>4 급</td><td>19</td><td>1</td><td>17</td><td>1</td></tr> <tr> <td>5급 이하</td><td>2,504</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2">기 능 직</td><td>소 계</td><td>2,345</td><td>-</td><td>-</td><td>-</td></tr> <tr> <td>5급 이하</td><td>2,345</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2">연 구 직</td><td>소 계</td><td>6</td><td>-</td><td>-</td><td>-</td></tr> <tr> <td>연구사</td><td>6</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2">별 정 직</td><td>소 계</td><td>4</td><td>-</td><td>-</td><td>-</td></tr> <tr> <td>5급상당 이하</td><td>4</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3">교 육 전 문 직 원</td><td>소 계</td><td>373</td><td>-</td><td>-</td><td>-</td></tr> <tr> <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td><td>48</td><td>-</td><td>24</td><td>24</td></tr> <tr> <td>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td><td>325</td><td>-</td><td>-</td><td>-</td></tr> </table>		기관별 직급별	합계	정장 특도 의회 사무 처	본청 (직속 기관)	지역 교육 청 (소속 기관)	공립 학교	합 계	5,259	-	-	-	-	정 무 직	1	-	-	-	-	일 반 직	소 계	2,530	-	-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	17	1	5급 이하	2,504	-	-	-	기 능 직	소 계	2,345	-	-	-	5급 이하	2,345	-	-	-	연 구 직	소 계	6	-	-	-	연구사	6	-	-	-	별 정 직	소 계	4	-	-	-	5급상당 이하	4	-	-	-	교 육 전 문 직 원	소 계	373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48	-	24	24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325	-	-	-				
기관별 직급별	합계	정장 특도 의회 사무 처	본청 (직속 기관)	지역 교육 청 (소속 기관)	공립 학교																																																																																																																																																																												
합 계	4,886	-	-	-	-																																																																																																																																																																												
정 무 직	1	-	-	-	-																																																																																																																																																																												
일 반 직	소 계	2,530	-	-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	17	1																																																																																																																																																																												
	5급 이하	2,504	-	-	-																																																																																																																																																																												
기 능 직	소 계	2,345	-	-	-																																																																																																																																																																												
	5급 이하	2,345	-	-	-																																																																																																																																																																												
연 구 직	소 계	6	-	-	-																																																																																																																																																																												
	연구사	6	-	-	-																																																																																																																																																																												
별 정 직	소 계	4	-	-	-																																																																																																																																																																												
	5급상당 이하	4	-	-	-																																																																																																																																																																												
기관별 직급별	합계	정장 특도 의회 사무 처	본청 (직속 기관)	지역 교육 청 (소속 기관)	공립 학교																																																																																																																																																																												
합 계	5,259	-	-	-	-																																																																																																																																																																												
정 무 직	1	-	-	-	-																																																																																																																																																																												
일 반 직	소 계	2,530	-	-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	17	1																																																																																																																																																																												
	5급 이하	2,504	-	-	-																																																																																																																																																																												
기 능 직	소 계	2,345	-	-	-																																																																																																																																																																												
	5급 이하	2,345	-	-	-																																																																																																																																																																												
연 구 직	소 계	6	-	-	-																																																																																																																																																																												
	연구사	6	-	-	-																																																																																																																																																																												
별 정 직	소 계	4	-	-	-																																																																																																																																																																												
	5급상당 이하	4	-	-	-																																																																																																																																																																												
교 육 전 문 직 원	소 계	373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48	-	24	24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325	-	-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5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1명”으로, “9인”을 “11명”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인”을 “7명”으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자중에서 위촉한다.”를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인”을 “4명”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호의 5인”을 “제1호의 7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호의 4인”을 “제2호의 4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제5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5조제3항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에”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에”로 한다.

제8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1명————— 11명————— 각 호에 따라 —————.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1. 7명————— ————— 풍부한 사람 ———— ————— 제2조에 따른 —————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2. 4인의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의원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4명————— —————.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②————— ————— 각 호에 따라 ————.
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5인 중에서 선임한다.	1. ————— 제1호의 7명—————.
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4인중에서 선임한다.	2. ————— 제2호의 4명—————.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_____ _____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생략)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생략)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각 호 _____ _____.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_____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_____ _____ 사람과 _____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생략) ②간사는 경상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수당 등) 경상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_____ _____ _____.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수당 등) _____ _____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에 _____.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_____ _____운 영에 _____.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3년 5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 1의 평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 중 “평은로 537”을 “천상로 139”로 변경한다.

별표 2의 평은초등학교의 위치란 중 “평은로 537”을 “천상로 139”로 변경한다.

별표 3의 이동중학교 명칭란 중 “이동중학교”를 “포항이동중학교”로 변경한다.

별표 5의 상회학교란 다음에 경산자인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경산자인학교	경산시 자인면 원효로 156길 83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유치원		【별표 1】 유치원	
명칭	위 치	명칭	위 치
평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영주시 평은면 평은로 537	평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영주시 평은면 천상로 139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칭	위 치	명칭	위 치
평은초등학교	영주시 평은면 평은로 537	평은초등학교	영주시 평은면 천상로 139
【별표 3】 중학교		【별표 3】 중학교	
명칭	위 치	명칭	위 치
이동중학교	포항시 남구 대이로 170	포항이동중학교	포항시 남구 대이로 170
【별표 5】 특수학교		【별표 5】 특수학교	
명칭	위 치	명칭	위 치
〈신	설〉	경산자인학교	경산시 자인면 원효로 156길 83

의정활동보고서

(제262회 임시회·제263회 정례회)



2013. 7 인쇄 / 2013. 7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602-5146

FAX : 602-5140



<비매품>